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해설(下)

홍 종 민 / 우리 협회 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목 차〉

Ⅰ. 안전관리비의 제정 배경
Ⅱ. 연역 및 법적 근거
1. 연역
2.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Ⅲ.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1. 주요내용
2. 고시내용 해설
1) 용어 정의
2) 적용범위
3) 공사의 분류
4) 계상기준
5) 계상의 시기
6) 수급자의 의무
7) 사용기준
8)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9) 안전관리비 사용의 확인
10) 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
Ⅳ. 안전관리비 관련규정 위반시 불이익
1. 안전관리비 중점 점검사항
1) 미계상 여부 확인
2)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비율 준수 여부 확인
2. 안전관리비 관련규정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검토
2) 위반항목 집계 및 확인서 징수
3) 의견진술
4)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Ⅴ. 참고 자료

Ⅳ.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위반시 불이익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위반시 불이익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무지침에 따라 참고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안전관리비 중점 점검사항

1) 미계상 여부 확인

○ 관급공사는 대부분 안전관리비를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있으나 자기발주공사 또는 민간공사는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안전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시 계상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발주자임. 따라서 시정지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과태료 처분 등 일련의 절차는 발주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점검시 확인사항

–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공사설계내역서를 열람하여 경비중 안전관리비가 별도항목으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계상기준 적합여부 조사

〈안전관리비 산출방법〉

구 분	안전관리비 산출방법	비 고
1. ○○○ 일반건설공사 가. 재료비 : 250,000천원 나. 발주자가 재료로 제공하는 재료비 : 350,000천원 다. 직접노무비 : 200,000천원	1) 대상액 가+나+다=800,000천원이므로 안전관리비는 800,000천원×0.0181+3,294천원=17,774천원 2) 대상액 가+다=450,000천원(5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비는 450,000천원×0.0248=11,160천원 1)은 2)의 1.2배를 초과하므로 법정 안전관리비는 2)의 1.2배인 13,392천원	1)이 2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1)이 법정 안전관리비임

※ 상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13,392천원이고 낙찰율이 90%인 경우 수급인은 13,392천원×0.9=12,052천원 이상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함

〈안전관리비 부족계상률 산정방법〉

$$\text{○ 부족계상률}(\%) = \left(1 - \frac{\text{계상된 안전관리비}}{\text{법정 안전관리비}}\right) \times 100$$

– 연차공사의 경우

• 총괄공사 계약 후 예산편성에 따라 연차별(차수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총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차수별 계상금액은 차수별 계약시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에 따름

– 일괄발주의 경우

• 여러 종류의 공사를 일괄발주한 경우에는 공사종류별로 안전관리비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됨

(ex) 공장신축 공사장에서 건축(100억), 기계설비(40억), 전기·통신(10억) 등 공사를 일괄발주하였다면 건축공사(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 1.88%를 일괄발주된 공사의 요율로 봄

2)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95-6호)의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

항 목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비의 항목별 사용내용 및 기준』을 검토하여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출

○ 각 항목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동안 주로 문제되어 온 부분이므로 예시된 사항을 위주로 중점점검

- 안전의식 고취명목의 각종 회식비
- 경비원, 교통안전유도원, 청소원 등의 인건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 무전기, 컴퓨터, 승용차 구입비 등 안전관리자가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한 각종 비품 구입비
- 급수시설, 세면·샤워시설, 간이화장실 설치비용 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을 지도 감독함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율 계상방법〉

$$\text{○ 목적외 사용율}(\%) = \frac{\text{목적 외 사용 안전관리비}}{\text{실행(실제집행된) 안전관리비}} \times 100\%$$

3)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 공사 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공정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최소 안전관리비의 사용율을 정한 것이므로 공정율에 따른 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 다만, 사용비율이 공사진척도보다 낮아도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공 정 율	20	40	60	80	100
사용기준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간값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4)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는지의 여부 확인

○ 대상 및 지도주기

- 전담기술지도(월 1회)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정기기술지도(분기 1회)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시 첨가될 예정임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없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제72조에 동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69조)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동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함

○ 기술지도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순수건설공사 및 전기 · 전기통신공사 기술지도)
- 대한산업안전협회(순수건설공사 및 전기 · 전기통신공사 기술지도)
-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전기 · 전기통신공사 기술지도)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및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전기 · 전기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이 2개소 이상 지정될 경우에는 순수건설공사에 한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함

2.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 부과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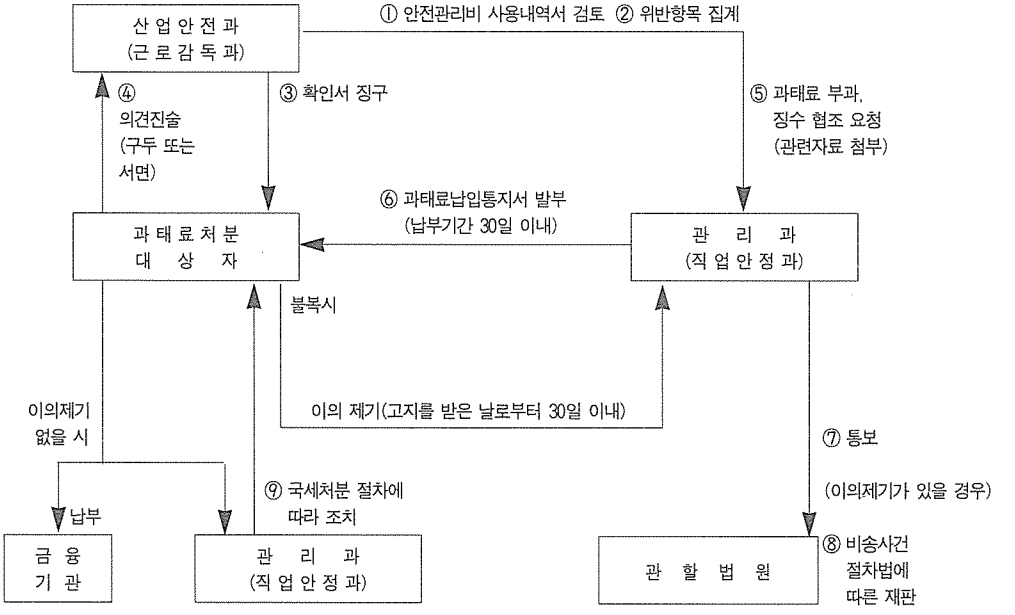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검토

○ 인건비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확인된 금액만 인정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사에서 작성하고 현장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역서를 비치하도록 조치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 ②항에 사용내역서 작성 ·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위반항목 집계 및 확인서 징구

○ 안전관리비 미(부족)계상, 목적 외 사용,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여부, 기술지도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소장 등 책임자에게 확인서 징구

○ 확인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내역서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확보

3) 의견진술

사례 1) 안전관리비 미(부족)계상시

확 인 서

사업장명 : ○○건설(주) ○○○○현장
소 재 지 : ○○시 ○○동 369
공사금액 : ○○○○원
공사기간 : 19 . . ~ 19 . .
발 주 자 : ○○○○(주소 :)
당 현장은 19 . . .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실시한 ○○○○점검(사업명)시 표준안전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미(부족)계상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법정 안전관리비
〔재료비(357억원)+직접노무비(238억원)〕× 0.0188 = 1,118, 600천원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비 : 공사금액× 0.7×비율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064,080천원
○ 부족 계상된 안전관리비 = 1,118,600 - 1,064,080,000 = 54,520,000
○ 부족 계상률(%)= $\frac{54,520,000}{1,118,600,000} \times 100 = 4.87\%$

19 . . .
위 확인자 현장소장 ○○○(인 또는 서명)

사례 2)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확 인 서

사업장명 : ○○건설(주) ○○○○현장
소 재 지 : ○○시 ○○동 369
공사금액 : ○○○○원
공사기간 : 19 . . ~ 19 . .
안전관리비 : 1억원(집행된 안전관리비 : 3천만원)
당 현장은 19 . . .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실시한 ○○○○점검(사업명)시 표준안전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사용일자	사용항목	목적 외 사용내역	금 액	비 고
계			6,900,000원	
'95. 1. 7	안전시설비	세면·샤워시설, 간이화장실, 지하수 개발	3,000,000원	
'95. 4. 8	안전보건 행사비	식대, 주대	1,000,000원	
'95.4.20	〃	이발, 목욕, 음료수 등	900,000원	
'95.4.20	안전점검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비	2,000,000원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율(%)
$= \frac{6,900,000}{30,000,000} \times 100 = 23\%$

19 . . .
위 확인자 현장소장 ○○○(인 또는 서명)

사례 3)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시

확 인 서

사업장명 : ○○건설(주) ○○○○현장
소 재 지 : ○○시 ○○동 369
공사금액 : ○○○○원
공사기간 : 19 . . ~ 19 . .
발 주 자 : ○○○○(주소 :)
당 현장은 19 . . .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실시한 ○○○○점검(사업명)시 표준안전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공정율 = 70%
○ 안전관리비 총액 = 100,000,000원(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 = 70,000,000)
○ 안전관리비 사용액 = 50,000,000원(미사용한 안전관리비 = 70,000,000 - 50,000,000 = 20,000,000)
○ 안전관리비 미사용율 = $\frac{20,000,000}{70,000,000} \times 100 = 28.57\%$
○ 안전관리비 미사용율(%)= $\frac{\text{미사용액}}{\text{사용기준금액}} \times 100$

(사용기준금액 = 안전관리비총액 × 공정율)

19 . . .
위 확인자 현장소장 ○○○(인 또는 서명)

사례 4)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확 인 서

사업장명 : ○○건설(주) ○○○○현장
소 재 지 : ○○시 ○○동 369
공사금액 : ○○○○원
공사기간 : 19 . . ~ 19 . .
안전관리자 선임유무 : 미선임
당 현장은 19 . . .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실시한 ○○○○점검(사업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기술지도 구분 : 전담기술지도
○ 기술지도 미실시 기간 : 1995. 3. 2 ~ 1995. 9. 2(7회)

19 . . .
위 확인자 현장소장 ○○○(인 또는 서명)

○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 적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 일부 사업주는 안전관리비를 비생산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안전시설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로 불법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 특히 중·소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활용도가 미흡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지도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비 관련 과태료 부과업체에 대하여는 PQ 심사시 감점(최고 -3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P·Q 대하여

○ P. Q(Prequalification) : P·Q 심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93. 7. 1일부터 도입하였음

○ P. Q 대상공사 : – 길이 100m 이상의 교량공사 등 22개 공사
– 대상공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P. Q 평가항목 : 시공경험(30점), 기술경력(40점), 경영상태(30점), 신인도(±20점)

○ 표준안전관리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감점기준

- 100만원 이하 -1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
- 500만원 초과 -3

Ⅴ. 참고자료

※ 의견진술 공문 작성예

○ ○ 지 방 노 동 청 (사 무 소)

우 480-013 ○○○시 ○○○ 3동 370-10/ 전화 / FAX

문서번호 안전(감독)
시행일자 19 . . .
받 음 ○○건설(주) ○○현장 소장(또는 발주자)
참 조
제 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취 급		청(소) 장
보 존	년	
과 장		
기 안		협 조

19. . . ○○○○점검(사업명)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준안전관리비를 부족계상(미계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위반, 기술지도 미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반법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제3항, 제4항)
○ 과태료 부과금액 : 금 ○○○만원
○ 의견진술기간 : 19 . . .까지. 끝.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안전관리비 미(부족)계상시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결정 및 부과·징수 요청

–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경우에는 내부결재공문과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결재를 얻고 징수관(지방관서 관리관)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요청

※ 과태료 부과 결정 내부결재공문 작성예

○ ○ 지 방 노 동 청 (사 무 소)

우 480-013 ○○○시 ○○○ 3동 370-10/ 전화 / FAX

문서번호 안전(감독)
시행일자 19 . . .
받 음 내부결재
참 조
제 목 과태료 부과 결정

취 급		청(소) 장
보 존	년	
과 장		
기 안		협 조

○○○○점검(사업명)과 관련하여 19. . . ○○시 ○○동 ○○소재 ○○건설(주) ○○현장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사용)내역을 확인 결과 표준안전관리비를 미계상(부족계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위반, 기술지도 미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3호,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69호)에 의거 ○○○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자 합니다. 끝.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안전관리비 미(부족)계상시는 발주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년도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경상적이전수입 (항)벌금 및 몰수금 (목)벌 금

결재			년월일	납입자				법위반 법조항	과태료액	과태료 부과사유	비 고
실·국·청·소장	과 장	담 당		주 소	사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 호				

※ 과태료 부과 요청 작성예

○ ○ 지 방 노 동 청 (사 무 소)

우 480-013 ○○○시 ○○○ 3동 370-10 / 전화 / FAX

문서번호 안전(감독)
시행일자 19 . . .
받 음 관리과장
(또는 직업안정과장)
참 조
제 목 과태료 부과 요청

취 급		청(소) 장
보 존	년	
과 장		
기 안		협 조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69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
- ○ 사 업 장 명 : ○○건설 ○○현장
- ○ 소 재 지 : ○○시 ○○동 ○○번지
- ○ 부과대상자명 : ○○○

나. 과태료 처분내용
- ○ 위반 법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제3항, 제4항)
- ○ 과태료 부과사유 : 표준안전관리비 미(부족)계상(목적 외 사용,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 기술지도 미실시
- ○ 과태료 부과금액 : ○○만원

붙임 :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1부. 끝.

산 업 안 전 과 장

○ 과태료 납입통지서 발부
-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입통지서 발부
- 과태료는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과태료 납입통지 이후는 관리과(2급지는 직업안정과)에서 처리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 전화 / 전송

문서번호
시행일자 19 . . .( )
수 신 (납입자 성명)
제 목 과태료 납입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_____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 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별첨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부과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_____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 아 래 -

1. 위반법 조항 : _____ 법 제 조 제 항
2. 위반내용 :
3. 납부할 과태료 금액 :
4. 과태료를 납부할 곳 :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과태료 납부기한 :

첨부 : 고지서 1부. 끝.

기 관 장

안전해설 2

○ 관할법원에 통보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 전화 / 전송
문서번호	
시행일자	19 . . . ( )
수 신	(○ ○ 법원장)
제 목	과태료 처분 이의사건 통보
	본직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_____ 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이의 신청인 성 명 :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이의 대상인 과태료처분 내용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 금액 :
	다. _____ 법 위반내용 :
	제 조 제 항 위반
	3. 이의 신청일 :
	4. 이의 신청사유 :
	5. 이의 신청에 대한 본직의 의견 :
첨 부 :	1.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과태료 납입통지서 사본 1부
	3. _____ 법 위반사실 조사관련서류 사본 1부. 끝.
	기 관 장

○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비송사건 절차법 관련조항(법 제247조 ~ 제250조)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임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강제징수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함

○ 표준안전관리비로 인한 과태료부과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등)

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5. 1. 5〉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 · 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95. 1. 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95. 1. 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 지정의 취소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5. 1. 5〉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 1. 5〉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대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363호)

법 조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비 고
제30조 1항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즉시 계상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단, 제2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시 즉시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0조 2항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현재 개정작업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 개정할 예정임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69호)

〈과태료부과 기준〉

구 분	내 용	300	250	200	150	100	80	50
○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 제1항)	○ 표준안전관리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 표준안전관리비 산정액의 25% 미만 계상한 경우		○					
	○ 표준안전관리비 산정액의 25% 이상 50% 미만 계상한 경우			○				
	○ 표준안전관리비 산정액의 50% 이상 75% 미만 계상한 경우				○			
	○ 표준안전관리비 산정액의 75% 이상 100% 미만 계상한 경우					○		
○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전단)	○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75% 이상 10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50% 이상 7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25% 이상 5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2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법 제30조 제3항 후단)	○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75% 이상 100% 미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50% 이상 75% 미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25% 이상 50% 미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25% 미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사용율 계산방법 사용율 = 사용액/사용기준금액 × 100[사용기준금액 = 안전관리비 총액 × 공정율(%)]							
○ 전문기관이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 제4항)	○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공사원가의 구성〉

구 분			비 목	세 목	성 질	내 용
공사예정가격	총원가	순공사원가	재료비(재료량× 단위당 가격)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재료비－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 ○ 부분품비－원형대로 부착되어 조성부분이 되는 부품, 외장재, 외주품
				간접재료비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소모성물품(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 소모공구·기구·비품－소모성기구(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포장재료비－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 ○ 가설재료비－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노무비(노무량× 단위당 가격)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목적물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대가	○ 기본급(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포함) ○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상여금(년 400% 기준) ○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대가(현장소장, 자재, 경리, 공무, 타자, 경비직 등)	(직접노무비 내용과 같음)
			경 비 (소요량×단위당가격)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기타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재비용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